

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

본부장	부원장

1. 출장목적

- 독일의 농업부문 조세제도 조사

2. 주요 조사내용

- 독일의 농업부문 조세체계 및 원칙
 - 독일 농업조세체계
 - 농업조세의 원칙
- 조세유형별 조세내용
 - 개별 농업조세 과세방식
 - 비농업부문 조세와의 차별성
- 농업조세규모 및 실적
- 독일농업조세제도의 특수성 조사
 - 농업조세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
 - 농업조세제도의 특수성
- 농업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
 - 비농업조세와 구별되는 농업조세에 대한 평가
 - 농업조세제도 역할에 대한 평가

3. 출장개요

출 장 자			출 장 지 역	출 장 기 간
소 속	직 위	성 명		
농업농촌정책 연구본부	연구위원	김 수 석	독일	2011. 6. 13 ~ 6. 19 (7일간)

4. 출장일정

일 자	일정	면담자	조사내용
6.13(월)	인천→프랑크푸르트(항공)→본(철도)		
6.14(화)	연방식량농업부(BMELV) 방문 본→뒤셀도르프(철도) 이동	농업조세과장 Mr. Riegler	독일 농업조세체계 및 조세내용 조사
6.15(수)	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주 농업 환경성 방문 뒤셀도르프→브라운슈바이크(철도) 이동	농업조세담당 Dr. Dietzel	주차원의 농업조세 운영체계 및 실적 조사
6.16(목)	튀넨연구소(vTI) 방문	연구위원 Mr. Forstner 등	독일 농업조세의 특 성 및 한계 조사
6.17(금)	브라운슈바이크 대학 및 서점 방문		자료 및 문헌 수집
6.18-6.19 (토, 일)	브라운슈바이크→하노버(철도) 하노 버→프랑크푸르트→인천(항공)		

5. 면담자

Mr. Bernhard Riegler

Referatsleiter

Bundeministerium für Ernährung,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
(BMELV)

Rochusstr. 1

53123 Bonn, Germany

Tel: +49-228-99529-3532

Fax: +49-228-99529-3469

H.P.: +49-178-1883925

E-mail: bernhard.reigler@bmelv.bund.de

Mr. Lutz Friedrichsen

Referat 125, Steuerangelegenheiten
Bundeministerium für Ernährung,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
(BMELV)
Rochusstr. 1
53123 Bonn, Germany
Tel: +49-228-99529-3412
Fax: +49-228-99529-3469
E-mail: lutz.friedrichsen@bmelv.bund.de

Dr. Jan Dietzel

Referat II-2
Ministerium für Umwelt und Naturschutz, Landwirtschaft und
Verbraucherschutz des Landes Nordrhein-Westfalen
Schwannstr. 3
40476 Düsseldorf, Germany
Tel.: +49-211-4566529
Fax: +49-211-4566456
E-mail: jan.dietzel@munlv.nrw.de

Mr. Bernhard Forstner

Dipl.-Ing. agr.
Johann Heinrich von Thünen-Institut (vTI)
Bundesallee 50
38116 Braunschweig, Germany
Tel.: +49-531-596-5233
Fax: +49-531-596-5199
E-mail: bernhard.forstner@vti.bund.de

Dr. Prof. Hiltrud Nieberg

Institutsleiterin
Johann Heinrich von Thünen-Institut (vTI)
Bundesallee 50
38116 Braunschweig, Germany
Tel.: +49-531-596-5101
Fax: +49-531-596-5199
E-mail: hiltrud.nieberg@vti.bund.de

6. 주요 조사내용

6.1. 농업경영체 및 농림업 개념

□ 농업경영체 개념

-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의미함. 즉, 농업생산 활동이 농업경영체의 지표가 됨.
 - 그런데 여기서 개념상 관건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임. 다시 말해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의 경제활동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농업경영체로 간주되는가 하는 것임.
- 이런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, 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(Förderrecht) 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, 다른 하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법 상의 농림업 개념이 있음.
 -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지표는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 총매출의 25%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됨

□ 조세상의 농림업 개념

- 독일에서 농업활동이 조세상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활동이 “조세상의 농림업”에 개념에 속해야 함.
 - 이는 모든 농업경영체의 활동이 전부 조세우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.
- 조세상의 농림업은 개념적으로 일반 “산업활동”(gewerbliche Tätigkeit)과 구별되는데, 농업경영체의 생산활동 중에도 “농림업 활동”에 속하지 않는 “산업활동”이 있음.
 - 농업경영체의 활동 중 “산업활동”으로 분류되는 것은 ①법인경영체(자본회사)의 생산활동, ②특별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임.
- 조세상의 농림업은 일차로 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영체 및 인적회사의 활동이 되고, 축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할 때 농림업 활동이 됨(이 조건을 초과하면 전체가 “산업활동으로 간주”).

- 처음 20ha까지는 ha당 10 축산단위(VE) 준수
 - 다음 10ha까지는 ha당 7 축산단위(VE) 준수
 - 다음 20ha까지는 ha당 6 축산단위(VE) 준수
 - 다음 50ha까지는 ha당 3 축산단위(VE) 준수
 - 더 이상의 사육지에는 ha당 1.5 축산단위(VE) 준수
-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은 농림업 생산활동이 기본이 되지만,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.
- ① 농업경영체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거나 유통업을 개설하여 파는 경우, 이 매출액을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함(2009년 개정).
 - 그 이전에는 개설한 유통업을 통한 매출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의 총 매출액의 40% 이하일 때, 전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함.
 - ② 농산물의 가공 수준이 제1단계 가공(예를 들어, 밀가루 혹은 버터)에 머물 때는 농림업으로 인정하나, 제2단계 가공(예를 들어, 빵 혹은 소시지)은 산업활동으로 간주함. 다만 공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제공되는 제2단계의 가공 매출액이 연간 10,3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함.
 - ③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부 구입하여 재판매한 순매출액이 경영체 순매출의 1/3 이하이거나 51,500유로 이하일 때는 유통업을 생산업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하지만, 그 이상일 때는 두 개의 별개 사업체로 간주함.
 - ④ 개설된 유통업이 별개의 사업체인 경우, 자가생산한 농산물의 매출액이 40% 이하이고,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매출액이 경영체 총매출의 30% 이상일 때, 개설된 유통업을 “산업활동”으로 간주함.
 - ⑤ 유통업이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된 경우에도, 개설된 유통업을 통한 자가생산 농산물의 매출액이 (생산업과 유통업을 합한) 총 매출액의 40% 이상되거나, 40% 이하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30%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농림업으로 인정함.
 - ⑥ 농기계수탁을 통해 얻은 수입이 경영체 총 매출의 1/3을 초과하지 않고 금액으로도 51,500유로를 넘지 않을 때, 이것 또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함.
 - ⑦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산업활동 부분이 발생하면, 전체 활동이 산업활동으로 간주되고 그 수입도 산업활동수입으로 처리됨.
- 농업경영체의 영농 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면, 농림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우대가 주어짐.

- 산업세(Gewerbesteuer) 면제
- 낮은 부가가치세(7%)
- 구입 및 판매 부가가치세율 차이(12%) 정산에 의한 면세
- 근로소득세 정산시 낮은 세율 적용
- 소득세의 특별 공제부분 적용

6.2. 농림업 자산세

□ 토지세

- 토지세(Grundsteuer)는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지방세로 과세됨.
 - 토지세는 독일에서 산업세에 이어서 두번째로 중요한 지방세임.
- 토지세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임.
 - 그러나 동독지역에서는 농지의 이용자(임차인)에게 부과되고 있음.
- 토지세는 세부적으로 농지 및 임야에 부과되는 것과 여타 토지에 부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.
- 농림업경영체에 부과되는 토지세는 농장의 단위가치(Einheitswert)로 부과됨.
 - 농장의 단위가치는 해당 농지의 수익가치(경영가치)와 농가가옥의 가치를 합한 것임.
 - 조세산정방식을 보면, 단위가치가 5만 유로인 경우, 토지세 측정치 6%를 곱해 300유로가 토지세측정액이 되고, 여기에다 기초자치단체(게마인데)가 세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과율(300%)을 곱해 900유로가 토지세액이 됨.
 - 토지세 측정치는 농장에 대해서는 6%, 개별 농지에 대해서는 3.5%로 설정됨.

□ 상속 및 증여세

- 농업분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속 및 증여세 규정(과세등급, 과세율, 공제액)에서 농업자산에 대해 특별히 다르게 규정되는 부분이 됨.
- 농업분야 상속 및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.

- 상속재산은 농지에 대한 수익가치와 농장가옥 및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합한 단위가치로 평가됨.
- 농지의 수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수익(표준소득)의 평균치를 근거로 이를 5.5% 이자율로 자본화(18.6배)하여 얻음.
- 그런데 수익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고 마이너스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최소가치를 설정함.
- 최소가치는 임차료를 자본화(18.6배)하여 얻음. 즉, 수익가치가 최소가치보다 적을 때는 최소가치를 농지의 가치로 함.
-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5년 이내에 매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로의 혜택이 사라지고 이를 다시 청산가치(Liquidationwert)로 재평가하여 과세함.
- 청산가치는 해당 토지(자산)에 대해 상속개시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됨.
- 농장가옥과 농업용 건축물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후 10년 동안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함.
-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이들 건축물을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함.

6.3. 농림업 거래세

□ 부가가치세

- “매출세”(Umsatzsteuer)로 명명되는 독일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농림업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은 정규방식과 평균방식으로 구성됨.

(1) 정규과세방식

-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통상 세율이 19%로 되어 있음.
 - 농산물과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는 7%임.
- 여기서 농업경영체가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판매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의 차액에 대해 정산함.

- 즉, 판매한 농산물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총액이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총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세무서에 추가로 납부하고,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음.

<표 1> 농림업 부가가치세 정산방식

단위: 유로, %

구 분	원가	세율	세액	거래가액
영농자재 구입	15,000	19	2,850	17,850
곡물 판매	45,000	7	3,150	48,150
부가가치세 차액			300	

(2) 평균과세방식

- 평균과세방식은 정규방식처럼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업경영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(평균화된) 10.7%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.
- 법인이 아닌 일반 농업경영체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서 정규방식과 평균방식 중 하나를 양자택일할 수 있음.
 - 평균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농업경영체(농업인)는 법인경영체, 임대인, 자가생산하지 않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됨.
 - 정규방식에는 부기기장이 반드시 요구되지만, 평균방식은 간이계산서 형태도 가능함.
 - 통상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농업경영체는 정규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, 설비투자가 적고 자가생산물 판매가 중심인 농업경영체는 평균방식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.
- 실제 서독지역 농업경영체의 90% 정도는 평균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 - 반면에 농업법인이 많고 초기시설투자가 많은 동독지역 농업경영체는 정규과세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(3)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면세

-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지 않음.
 - 지난 해 매출이 17,5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50,000유로를 초과하

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함.

□ 토지취득세

- 토지취득세 부과대상은 취득한 토지와 (별개의) 건물이 됨. 여기서 토지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과 같음.
 -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
 - 거래자의 배우자에 의한 취득
 - 이혼에 의한 재산분배로 인한 취득
 - 매도자의 직계가족에 의한 취득
 - 경지정리 절차에 의한 취득
- 토지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매도자와 매입자가 되고, 세율은 3.5%임.

□ 전기 및 에너지세

- 전기세는 MW당 20.5유로이고, 재생에너지(수력, 풍력, 태양에너지, 지열, 매립장가스, 바이오매스 등)에 의한 전기는 면세가 됨.
- 생산업체와 농림업경영체에 대해서는 40%(8.2유로)의 전기세 감면이 있음.
- 에너지세는 등유의 경우 1,000l당 61.35유로, 디젤유는 1,000l당 470.4유로 등인데, 농림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있음.
 - 즉, 등유는 1,000l당 16.36유로, 천연가스는 MWh당 2.2유로, 액화가스는 1,000kg당 24.24유로로 에너지세가 책정됨.
 - 디젤유는 1당 0.2148유로의 조세감면이 있는데, 연간 사용한도는 1만l로 정해짐.

6.4. 농림업 소득세

- 독일에서 소득세는 7가지 소득원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. 즉, 소득세 대상은 3가지 유형의 이윤과 4가지 유형의 잉여소득으로 이루어짐.
 - 경영체 수입에서 도출되는 이윤은 ①농림업, ②일반 산업, ③자영업의 경제활동으로 유형화 되고, 개인수입에서 도출되는 잉여소득은 ①비자영노동, ②자본자산, ③임대사업, ④기타 수입으로 유형화 됨.

- 면세되는 기본공제는 개인 7,834유로, 부부합산 15,668유로이고, 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14~42%로 설정됨.
 - 실제 세액은 과세소득구간별 평균세율로 산정하는데, 평균세율은 14개 구간 0~30.5% 크기로 이루어짐.
- 소득세 부과에서 농림업 활동이 우대받는 부분은 특별공제에 있음.
 - 농림업 공제는 개인의 연간소득이 30,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670유로,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1,4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,340유로를 공제하는 것임.
- 농림업 뿐 아니라 일반 산업에도 주어지는 소득세 공제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음.
 - ① 경영체의 양도소득이 136,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45,000유로를 공제하고,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액을 삭감해 나감(양도소득이 181,000유로가 되면 공제액이 없어짐). 다만 여기서의 전제조건은 납세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생애 한번만 주어진다는 것임.
 - ②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추가적으로 소득세율을 경감하는 우대조치가 동반됨. 즉, 해당되는 구간평균세율을 56% 수준까지 경감하여 세율의 최고한도가 15%를 초과하지 않게 함. 여기서의 전제조건은 앞과 같음.
 - ③ 특정 경제재화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을 대체재화를 마련하기 위해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상의 우대가 주어짐.

□ 산업세

- 산업세(Gewerbesteuer)는 지방세로서 산업활동을 하는 산업경영체에 부과됨.
 - 산업경영체는 회사의 법적 형태와 경제활동 성격에 따라 규정됨.
 - 법인인 자본회사와 사업 및 경영조합은 사업성격에 상관없이 산업경영체임.
 - 인적 회사(합명회사, 합자회사)는 자동적으로 산업경영체로 되지 않고, 경영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산업경영체 여부가 결정됨.
 -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 회사는 산업경영체가 아님. 농림업 이외 산업활동에서 얻은 연간수입이 10,300유로 이상이면 산업경영체로 분류됨.
- 농림업경영체는 산업세가 면제됨.

- 사업 및 경영조합이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산업세가 면제됨.
- 산업세 산정방식을 보면, 법인세 또는 소득세상의 이윤에다 24,500유로를 기본공제하고 3.5%의 세율을 곱하여 산업세측정액을 구함. 여기에 게마인데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과율(예컨대 400%)을 곱하여 산업세를 산정함.

□ 법인세

- 법인세는 자본회사(유한회사, 주식회사, 사업 및 경영조합)인 법인에 부과됨.
 - 사업 및 경영조합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회사로 기능할 때 법인세가 면제됨.
- 법인세 크기는 법인의 소득에다 단일세율 15%를 곱하여 산출함.
 - 법인의 자기자본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와 산업세, 그리고 통일연대부담금을 합하여 총 세율이 29.83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7. 수집자료

- aid. 2009. Besteuerung der Land- und Forstwirtschaft. Bonn.
-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. 2009. Steuertipps für Land- und Forstwirte. München.
-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. 2009. Die Erbschaft- und Schenkungsteuer. München.
-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,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(BMELV). 2011. Die wirtschaftliche Lage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(Wirtschaftsjahr 2009/10). Bonn.
-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,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(BMELV). 2011. Neuregelung der Grundsteuer. Bonn.

- European Agri-Nutri Trade Center(EATC). 2000. Taxation of Agriculture in Europe. Deventer.
- Parsche, Rüdiger and Matthias Steinherr. 1995. Besteuerung der Land- und Forstwirtschaft in ausgewählten EU-Partnerländern. ifo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. München.